
'15년 하반기

자체 종합감사 결과보고

2015. 12. 16.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담당관

|| 목 차 ||

I. 감사 목적	1
II. 감사 개요	1
III. 감사 결과	2
< 총 평 >	2
1. 일반민원 처리분야	3
가. 민원처리기간 미준수 및 기간연장 조치 미흡	3
2. 계약업무분야	5
가. 계약대가 지급 지연	5
나. 검사기간 지연	7
다. 감독과 검사직무 겸직제한 미 준수	9
라. 예산절감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 미흡	11
3. 회계분야	12
가. 공무원여비 지급기간 미 준수	12
나. 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14
다. 청렴교육 공무원 여비 사업비에 편성·집행	15
라. 업무추진비 사용 후 실명 서명	16

4. 기타분야	17
가. 지침 등의 규정 개정 필요	17
나. 민간파견자 초과근무 관리 미흡	18
IV. 우수 사례	19
1. 터널안전분야 기획조사로 부패적발	19
2. 태양광발전장치 공개경쟁입찰로 예산절감	20
3. 공익보호조치 관련 소송 적극적 대응	21
4.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처리절차 개선	22
5. 공공보건의료 리베이트 근절 행동강령 개선 권고	23
V. 향후 조치계획	24

I

감사 목적

- 2년 단위의 주기적인 자체감사를 통해 위원회 업무처리시스템, 예산집행·절차 등에 대한 불합리한 행태 및 관행 개선
 - 내부 직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불합리한 행태 및 관행 개선
 - 모범 사례를 발굴·전파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 환경 조성 및 각 실·국간 균형잡힌 업무처리 유도
- ※ 근거: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 “2015년도 위원회 자체감사계획 알림”
(감사담당관-282, '15.03.06.)

II

감사 개요

- 실시기간 : 2015. 10. 12. ~ 2015. 10. 30.(15일간)
- 감사대상
 - 부패방지국(10개과), 청렴연수원(2개과)
- 대상업무 : '13. 10월 ~ '15. 9월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 및 회계
- 중점분야
 - 대상부서 업무처리관련 제반사항
 - 민원처리, 계약업무, 회계분야 등의 집행관련 사항
 - 제반 업무의 법적처리기간 준수, 직원복무, 자체 지침·예규 등의 준수여부 등
- 감 사 반 : 감사담당관(반장) 등 4명

총 평

- 최근 2년간('13.10.~'15.9.) 업무 처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관련 법령 지침 등을 전반적으로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특히, '15. 3월부터 실시한 감사취약분야 교육 이후의 현황을 보면, 과거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던 업무추진비 실명기재 미흡, 계약대가 지급 지연 등의 문제가 현격히 개선되고 있음
- 다만, 일부 관련법령 등의 준수사항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교육 실시와 부서장의 관리가 요구됨
 - 민원처리 관련하여 처리기간을 초과하여 처리된 사례가 나타남
 - 계약업무 분야에서는 담당자의 관리 소홀과 해당 업무의 규정을 잘 알지 못하여 위반하는 사례가 나타남
 - 여비지급 등의 내부 직원 서비스 관련사항은 관행적으로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 개선이 요구됨
- 한편, 터널안전분야 부패 적발, 태양열발전장치 공개경쟁입찰로 예산 절감, 공익보호관련 소송 적극적 대응 등 맡은 바 직무를 적극적으로 개선·수행한 수범 사례도 있었음

1. 일반민원 처리분야

가 | 민원처리기간 미준수 및 기간연장조치 미흡

□ 기간 내 처리 및 연장조치 원칙

- 위원회로 접수된 일반민원은 유형별 처리기간(즉시·7일·14일)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할 경우 당초 처리기간 내에 기간연장조치를 하여야 함

◇ 일반민원 처리기간(「국민권익위원회 일반민원사무처리지침」 별표1)

- (즉시) 민원접수사실 확인, 재직증명 등 신청
- (7일) 단순질의, 고충민원·부패신고·행정심판 관련 절차문의 및 처리촉구 등
- (14일) 법령질의, 정책·제도 등 개선 건의, 직원 징계요구

◇ 처리기간의 연장(「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2회까지 기간연장이 가능함

□ 감사 결과

- 감사대상기간 동안 피감부서에서 처리된 전체 일반민원 1,290건 중 139건(10.8%)이 처리기간을 초과하여 처리되었음
 - 처리기간 초과일수가 5일 이내인 경우가 대부분(102건, 73.4%)이며, 5일을 초과하여 처리된 37건은 기간연장조치를 누락하거나 민원이 접수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함에 따라 처리가 지연된 것으로 확인
- 전체 처리기간 초과건 139건 중 기간연장조치를 하지 않은 건이 130건(93.5%)에 달하여 처리기간 단축 노력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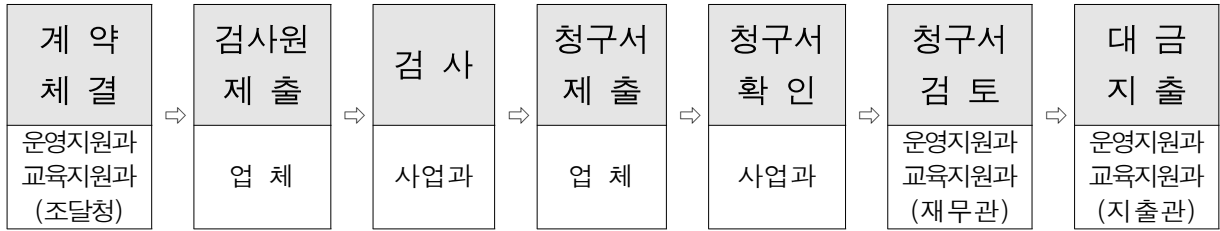
□ 조치할 사항

조치할 사항	처분 요구
○ 민원처리 시 관련규정에서 정한 처리기간을 철저히 준수하기 바람 -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할 경우 절차에 따라 반드시 기간 연장조치 실시	주의

2. 계약업무 분야

가 | 계약대가 지급 지연

□ 대가지급 업무 흐름도



□ 대가 지급기간 준수 의무

- 대가지급은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 지급

- 대금지급청구를 받고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 예산 미배정에 따른 대가지급 기한은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 지급

※ 대가지급기한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함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58조

□ 감사 결과

- 50만원 이상건에 대해 점검한 결과, 대금 지급기간 5일을 초과한 건은 6건(0.5%, 1,240건 중)이 확인됨

- 대금지급기간은 대국민 민원서비스 일환으로 국민과의 약속이며, 부득이한 경우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특약을 정해 기간연장 조치가 필요한 사항임
- 특히, 강사료, 자문료 등은 계약대가에 준하여 신속히 지급 하시기 바람

□ 조치할 사항

조치할 사항	처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대금지급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되도록 지출관리 및 사전점검 철저 - 부득이한 경우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특약을 정해 그 기간을 연장 조치 ※ 사업부서의 서무 뿐만아니라 사업담당자도 디브리인을 통해 사업 진행사항 파악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 포함 	주의

나 | **검사기간 지연**

□ **검사기간 준수 의무**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직접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함
- 준공 또는 기성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완료**하여야 하고
 - 검사가 완료 되어야 대금이 지급될 수 있음
 -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 연장 가능
- 검사자는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 상기 이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될 때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함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55조

□ **감사 결과**

-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 신속히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 100만원 이상 계약건을 점검한 바, 검사기간 **14일을 초과한** 건은 4건(1.7%, 237건 중)임

□ 조치할 사항

조치할 사항	처분 요구
○ 계약의 이행완료통지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14일 이내에 검사가 완료되도록 사전점검 철저	주의

□ 감독과 검사제도

- (감독) 계약상대자가 당해계약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함으로서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함
- (검사) 계약 이행으로 인한 성과가 계약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것임

□ 감독의 직무와 검사의 직무 겸직 금지

- 감독의 직무와 검사의 직무는 원칙적으로 겸할 수 없음. 다만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7조에 의한 경우는 겸직 허용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 감독과 검사 겸직 허용 사항 >

-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검사에 있어서 감독을 행하는 자외의 자로 하여금 검사를 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등 당해 계약의 이행후 지체없이 검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 계약금액이 3억원이하인 물품의 제조 또는 공사계약의 경우
- 감리대상 공사계약의 경우
-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기성검사를 갈음하는 경우(매 3회마다 1회는 별도의 독립된 검사 필요)

□ 감사 결과

- 감독의 직무와 감사의 직무는 서로 다른 사람이 수행하여 계약내용의 적정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 ※ 기성검사시는 감독한자가 검사를 겸할 수 있으나, 감독이 검사를 겸할 시는 매 3회마다 1회는 별도의 독립된 검사가 수행되어야 함
- 5백만원 이상 계약건에 대해 점검한 바, 75건(43.7%, 172건 중)의 계약건은 한사람이 감독과 검사를 겸하여 수행하였음이 확인됨

□ 조치할 사항

조치할 사항	처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계약의 적정한 이행확보를 위해 감독과 감사는 서로 다른 사람이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독은 사업담당자가, 감사는 감독의 상위 직급자 또는 선임자가 하되 가능한 한 부서장이 수행 (권장) ※ 100만원 이하의 물품 납품과 관련된 검사는 그 사안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 필요 	개선

라 예산절감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 미흡

□ 예산집행의 일반원칙

-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의 경비로 사용할 수 없고, 절약하여 해당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함

관련법령

- 「국가재정법」 제45조,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감사 결과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구매(용역포함) 계약은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 1억원 미만인 계약은 필요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의3
- 조달의무가 아닌 계약은 자체계약을 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조달계약을 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필요

□ 조치할 사항

조치할 사항	처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의무가 아닌 계약사항은 자체계약 시행 필요 - 조달계약 의무가 아닌 사항은 자체계약을 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절약된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시기 바람 ※ 단, 조달계약을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사업계획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결재를 득하여 시행함으로써 업무회피, 예산낭비 등의 의혹이 없도록하시기 바람 	개선

3. 회계 분야

가 **공무원여비 지급기간 미 준수**

□ 공무원 여비지급 기준

- 국내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국외 여행자는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 신청
 - 다만, 해당부서의 서무담당자가 대신 신청하거나 2인 이상이 조를 이루어 출장을 간 경우 그 중 1인이 대표로 신청 가능
- 공무원 여비는 출장 가기 전에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 예산의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 완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국내출장인 경우는 1주일 이내 국외출장인 경우는 2주일 이내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함

관련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 감사 결과

- ‘15.1월~9월까지의 근무지의 출장여비 지급실태를 점검한 바, 그 지급 기한이 지연되어 평균 28일이 소요되었고 최장 106일이 소요된 건도 있음
- 장기 지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 지급 기한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해당 공무원은 지급된 여비가 제대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고

- 여비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서무담당자에게는 보관중인 여비지급 증빙자료 분실 등의 우려가 있으며
- 여비를 출장이 완료된 이후 정산급으로 지급시 출장중에 발생하는 일비, 식비 등의 비용을 해당 직원의 사비로 지급해야 하므로 여비지급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 직원들의 불만 야기

□ 조치할 사항

조치할 사항	처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여비를 정산급으로 지급할 시는, 국내출장인 경우 출장완료 다음날부터 1주일 이내, 국외 출장인 경우 2주일 이내에 지급하시기 바람 - 이 경우에도 가능한 한 전 주의 출장 건은 출장 다음 주 내에는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 단, 예산부족으로 인한 예산배정 지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지급 	권고

나 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 예산의 편성과 집행

- 예산은 예산 편성지침과 집행지침에 따라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함
- 해외출장과 관련된 정액경비, 연회비·선물비, 부대경비 등의 해외출장 경비는 사업추진비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 기관 운영상 불가피하게 해외출장 경비가 관서업무비에 편성된 경우에는 사업추진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

관련규정

-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감사 결과

- 국외기관 방문시 기념품 구매 대금을 관서업무비로 집행한 사례가 있음
 - 이는 해외출장을 위한 경비(선물비)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사업추진비에서 집행하여야 하나,
 - 사업추진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상기 대금을 별도의 예산 편성 없이 관서업무비로 집행한 것은 부적정한 예산 집행임

□ 조치할 사항

조치할 사항	처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회비·선물비 등의 해외출장 경비는 사업추진비에서 집행토록 하고<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는 관서업무비에 별도로 편성하여 집행	통보

다 청렴교육 공무원 예비 편성·집행

□ 공무원예비 편성·집행

-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 예비는 사업비에 편성·집행함으로써
 -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타 예산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필요

관련규정

-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감사 결과

- 청렴연수원에서 '15.1월 ~ '15.9월까지 집행한 공무원 예비를 점검한 결과
 - “기관 맞춤형 청렴교육“에 소요된 예비 등 대부분이 청렴교육과 관련되어 해당 사업예산으로 편성·집행 되어야 할 것이나
 - 청렴연수원이 독립되기 전의 예산구조를 현재까지 유지하면서 “기관운영기본경비”로 편성·집행함에 따라 예산배정 지연 및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사업의 애로 발생

□ 조치할 사항

조치할 사항	처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렴교육과 관련된 공무원 예비는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사업예산에 편성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업이 타 예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람 	권고

□ 업무추진비카드 사용 후 실명 서명

- 업무추진비 집행을 위해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카드전표 등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자가 반드시 실명으로 서명하여야 함**(카드전표 등에 서명란이 없는 경우에도 여백을 이용하여 서명)

관련법령

-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기획재정부)」 제22조의1*,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지침」

* 제22조의1(정부구매카드 사용자의 실명 서명의무)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용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카드전표 등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카드전표 등에 서명란이 없는 경우에는 여백을 이용하여 서명하여야 한다.

□ 감사 결과

- 국회의 지적과 반복적인 자체감사 지적사항이었던 ‘**업무추진비카드 사용 후 실명 기재**’ 여부에 대한 실태 점검* 결과

* ‘15. 9월 회계담당자(서무 및 주무 사무관) 교육 이후의 실태를 점검

- 업무추진비 사용자의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그 실명 기재 사항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됨
- 이는 회계담당자 등에 대한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각 사용자와 관리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

4. 기타 분야

가 | **지침 등의 규정 개정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사무운영지침」 제11조에 따르면,
 - 공직유관단체가 소관 비위면직자의 확인자료 제출 및 보고시는 감독을 받는 부서*에 제출 및 보고하고, 감독기관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 및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 부·처·청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
- 하지만, 현재는 감독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어 규정과 현실이 불일치함

□ 감사 결과

- (해당 부서 의견) 공직유관단체가 소관 비위면직자의 확인자료 제출 및 보고시 감독기관을 거치게 되면 제3자 정보공유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있어 위원회에 직접 제출토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규정과 다르게 하고 있다면 관련 지침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조치할 사항

조치할 사항	처분 요구
○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사무운영지침」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시기 바람	통보

나 | 민간파견자 초과근무 관리 미흡

□ 민간파견자에 대한 복무관리 기준

- 민간파견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공무원 복무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위원회 직원과 동등한 복무 감독을 실시하여야 함

※ 「국민권익위원회 파견직원 관리규정」 제9조 근거

- 민간파견자의 초과근무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명령권자의 초과근무 명령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소속 부서에서는 초과근무실적을 관리하고 매월 보수지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감사 결과

- 초과근무명령대장 및 확인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등 초과근무 명령·승인 절차를 미 이행한 부서가 확인됨
 - 해당 부서는 부서장의 초과근무 명령·승인을 득하지 않은 초과근무 실적을 월 단위로 사후 결재하여 원 소속기관에 통보하였음
 - 초과근무는 부서장의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고, 명령 없이 근무한 경우 그 다음날까지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근무일별 명령·승인내역 없이 월1회 사후 결재하는 것은 부적정

□ 조치할 사항

조치할 사항	처분 요구
○ 민간파견자의 초과근무 시 부서장의 초과근무 명령·승인절차 이행, 초과근무대장(e사람) 작성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람	주의

1 터널안전분야 기획조사로 부패적발

□ 추진 배경

-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부패신고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터널안전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추진

□ 추진 내용

- 고속도로·철도·국도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토목공사 중 터널분야를 대상으로 자재 누락 등을 통한 공사비 편취를 중점적으로 점검
- 전 터널공사 현장을 점검 대상으로 하되, 자재·공법 등 특이사항 위주로 조사대상 공구를 선별하여 집중 조사
- 공사비 편취 등 부패혐의가 인지될 경우 위원회에 상정하고, 경찰청 등 수사 기관에 이첩하여 공조(대구지방경찰청과 사전에 업무협조 MOU 체결)

□ 주요 성과

- 2015. 2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전국 철도·고속도로·국도 등 총 연장 500m 이상의 터널이 있는 공구 64개를 대상으로 점검
- 이중 9개 공구에서 락볼트 누락시공, 무진동암파쇄구간을 일반발파 공법으로 시행, 전자 발파시 발파공수 과다 계상 등으로 기성금 140억원 상당을 과다 수령한 행위 적발

□ 향후 계획

- 조사성과 위원회 보고하고, 언론홍보, 관련기관 실무자 교육, 제도개선, 언론홍보 등을 통해 '안전한 나라' 건설과 위원회의 부패방지 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 환기

□ 추진 배경

- 청림연수원 숙소동은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대상 건축물로 승인되었고, 본 공사내역에 관급자재 설치로 설계 반영됨

※ 태양광발전장치 설계내역 : 태양전지모듈(250Wp) 120매, 인버터(30kw) 및 지지대, QR접속반 등

□ 추진 내용

- 당초 설계내역에는 특허제품(QR접속반)이 포함되어 있어, 그 사유로 수의계약이 가능하였으나

- 예산절감을 위해 감리단과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결과, 동일 규격의 일반제품으로 변경하여도 그 기능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어서 일반 제품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변경

- 변경된 설계를 기준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그 중 최저가를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이를 시공함으로서 약 4천만원의 예산절감

《공사비 검토》

(단위 : 천 원)

공종	당초 설계금액	공개입찰		비고
		금액	증·감	
태양광발전장치	120,890	80,064	△40,826	

□ 주요 성과

- 동일한 규격의 제품을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시행함으로써 국가예산 절감 및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시행

□ 추진 배경

- '제주 7대경관 선정 전화투표' 관련 내부 신고자에 대해 ○○기관이 전보(1차) 및 해임(2차)조치를 하자, 위원회가 해임취소 및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기관이 행정소송 제기

□ 추진 내용

- '12. 12. 31. ○○기관, 신고자 해임조치
- '13. 4. 22. 위원회, 보호조치 결정
- '15. 5. 14. 서울행정법원, ○○기관 청구기각(위원회 승소)
- '15. 5. 15. ○○기관, 항소장 제출
- '15. 9. 22. 서울고등법원, ○○기관 항소기각(위원회 승소)

□ 주요 성과

- 해당 사례는 신고자의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신법상 공익침해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신고자가 이를 사실로 믿을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보호조치결정을 한 건임
- 이러한 점을 법원에 적극 주장, '신고사실에 오류가 있더라도 신고자의 믿음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보호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끌어냄으로써 공익신고자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새로운 선례를 만든 사건임

□ 향후 계획

- ○○기관의 상고심 제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공익신고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위원회의 역할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 추진 배경

- 기관에서 입력하는 '제로미시스템 부패공직자 자료'를 근거로 비위면직자 (과면, 해임) 취업제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 입력을 누락할 경우 점검대상이 누락될 개연성 존재

- 취업회사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와의 대조과정에서 사업자등록 번호 없이 확인하다 보니 확인과정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 애로 상존

※ 인사혁신처에서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 명단을 매년 지정·고시하며, 권익위는 지정된 영리사기업체 명단을 활용하여 취업점검

□ 추진 내용

- 비위면직자의 정확한 현황파악을 위하여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 비위면직자 발생현황 전수조사 실시('15. 4.)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및 자료제공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설명회 실시('15. 6.) 및 자료제공 협조요청('15. 7.)
- 취업제한기관 대조를 위한 인사혁신처(취업심사과)와 협의 실시('15. 7.)

□ 주요 성과

- 제로미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비위면직자 192명(전체 대비 약 10%) 추가 발굴 및 이에 대한 취업실태 점검 실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심의회('15. 7. 27.)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제공에 대한 동의가 의결되어 '15년 하반기 점검부터 제공 실시
-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받아 비위자 취업실태를 점검함으로써 소요기간은 2주 이상 단축되고 점검의 정확성 제고

□ 추진 배경

-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행정처분 기준강화 등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리베이트 수수 관행 지속

※ '13년 권익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응답자의 28.1%가 리베이트를 경험('13.12.)

□ 권고 내용 (공공의료기관 자체 행동강령 개선 권고)

- 리베이트 제공 금지 업체를 직무관련자로 명시 및 리베이트 정의규정 마련
- 외부강의 등 신고규정 보완 (제약업체, 학술대회, 제품설명회 등 명시)
- 리베이트 수수자 징계조치 의무화, 행동강령 이행점검·교육 강화
- 의약품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의약품 입찰 품목 선정 시 심의절차 의무화 등

□ 주요 성과

-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윤리의식과 청렴의식을 제고하여 리베이트 수수 관행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질 향상 기대

V**향후 조치계획**

- 감사대상 수감부서에 감사결과 통보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 자체감사 결과 직원 교육 실시

- 감사결과 감사원 통보
 - 공공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통보

- 감사결과 공개
 -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